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28)

수의사와 김영란법 (3)

한두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는 이기만씨에게 규정대로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 1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규정대로 처리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축의금 100만원은 이기만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까?



강남구 보건위생과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의 수의사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관할 구역 내의 축산물판매업자 이기만씨가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것을 적발한 일이 있었다.

결혼식날, 김명의 수의사의 동료 공무원인 최성실씨는 축의금 10만원을 냈고, 타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대학동창 박동기 수의사는 축의금 50만원을 냈다. 그리고 김명의 수의사에게 적발당한 이기만씨 역시 결혼식에 찾아와 축의금 100만원을 냈고, 적발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관할 구역 내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조진실씨도 축의금 20만원을 냈다.

김명의 수의사의 고교 동창회장 정길동씨는 동창회칙에서 정한 축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명의 수의사의 삼촌인 김대범씨는 별도로 김명의 수의사에게 200만원을 주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김명의 수의사는 이기만씨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낸 것을 발견하고, 즉시 1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러자 이기만씨는 김명의 수의사의 부인 강내조씨를 찾아와 축의금이라며 다시 100만원을 주었고, 강내조씨는 이 사실을 김명의 수의사에게 알렸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명의 수의사가 받은 (1) 최성실씨, (2) 박동기 수의사, (3) 이기만씨, (4) 조진실씨의 각 축의금과, (5) 삼촌인 김대범씨가 준 200만원과 (6) 동창회장 정길동씨가 전달한 100만원, 그리고 (7) 김명의 수의사의 부인 강내조씨가 받은 100만원이다. 사회생활에서는 축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고,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직무관련성'이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금품을 받는 사람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며, '대가성'은 금품을 제공하면서 특별한 특혜를 바라는지 여부가 기준이라고 보면 판단이 쉽다. 다만,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는 이를 제공받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지

난 제27회 칼럼 참조). 그리고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즉, 10만원까지는 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이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위의 각 경우를 살펴보자.

최성실씨의 축의금 10만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축의금은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최성실씨는 동료 공무원이므로 김명의 수의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되지만, 10만원까지의 축의금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최성실씨의 축의금은 문제가 없다.

박동기 수의사의 축의금 50만원에 대하여

박동기 수의사는 50만원의 축의금을 냈으므로 축의금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김명의 수의사가 박동기 수의사에게 50만원을 받은 경우이다. 그런데 박동기 수의사는 타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김명의 수의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은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박동기 수의사의 축의금 50만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기만씨의 당초 축의금 100만원에 대하여

이기만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바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기만씨의 축의금은 10만원을 초과하여, 이는 김명의 수의사가 이기만씨에게 일단은 100만원을 받은 경우이다. 다만 김명의 수의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이기만씨가 100만원을 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반환한 것이다.

김영란법 제9조 제1항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 제9조 제2항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김영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금품을 즉시 반환하였다. 김명의 수의사가 제9조 제1항의 서면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금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서

면으로 신고도 하고 반환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은 둘 중 한 가지만 행하여도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김명의 수의사가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일 이기만씨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냈고 김명의 수의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김영란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처벌을 받는다.

조진실씨의 축의금 20만원에 대하여

조진실씨 역시 관할 구역 내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므로 김명의 수의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축의금은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데, 조진실씨는 축의금으로 20만원을 하였으므로 이는 김명의 수의사가 조진실씨에게 20만원을 받은 경우가 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데, 김명의 수의사는 20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에 의해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기만씨와 마찬가지로 조진실씨에게도 축의금을 반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명의 수의사는 조진실씨에게 축의금을 반환한다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20만원 전부를 반환해야 할까 아니면 축의금은 10만원은 받아도 되므로 10만원만 반환하면 될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20만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었다. 20만원 전부가 부정한 금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축의금은 10만원은 허용되는데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장을 바꿔서 축의금은 가분적이므로 1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다시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는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 초기라서 체계를 온전히 잡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얼마를 반환하면 될지는 판례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었으나,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판례에서도 주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권익위가 유권해석의 입장을 바꾼 것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10만원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대범씨가 준 200만원에 대하여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대범씨는 200만원을 주었으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김영란법을 어긴 것일까? 하지만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4호는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한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범씨는 김명의 수의사의 삼촌이므로 200만원이라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길동씨가 전달한 100만원에 대하여

김영란법은 위에서처럼 친족인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제8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공직자의 동창회 등이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역시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길동씨가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없다.

강내조씨가 받은 100만원에 대하여

이기만씨는 김명의 수의사가 아닌 강내조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돈을 받았더라도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가. 배우자가 받은 금품에 대하여

공직자 본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제8조 제4항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도 동일하게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내조씨가 이기만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우도 김명의 수의사가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명의 수의사는 강내조씨가 받은 1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 김영란법 제9조 제2항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안 경우에도 본인이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역시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김명의 수의사는 강내조씨가 받은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거나 기관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나.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하여

김명의 수의사는 이기만씨의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규정대로 1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이기만씨의 금품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금품을 받았으나 특별한 혜택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는 모두 처벌하고 있다. 그간 뇌물죄는 대가성을 필요로 하여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어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례별 정리

축의금은 10만원까지 허용된다. 10만원까지의 축의금은 공직자가 받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친족에게 받는 경우 또는 동창회 등 모임에서 내부 규칙대로 받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금품을 수수하는데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며,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